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 제10차 기후환경 세계선물거래소 운영을 위한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실천 세계선언문

“기후환경을 위한 국제녹색인증 시스템은 이미 시작되었다!”

인류의 무분별한 이기심으로 인해 파괴된 기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인 녹색으로 대체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협약, 환경관련 국제법, 무역관련 국제법 등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녹색실천은 선택이 아닌 전 세계인의 책무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녹색은 과연 누가 증명할 것이며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일까?

기후 환경분야의 녹색실천을 위한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의 국제녹색인증(IO-WGCA IGC) 시스템은 이를 위한 정확한 기준과 국제법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로부터 우주 유, 무기체를 보존하는 공공의 이익과 자국 기업들의 원활한 국제시장 진출 및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각 국가별로 다양한 인증체계가 있으나 이는 해당 국가를 벗어나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 시스템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FTA, 아포스티유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정전 절연체(NAU-CLEAN & Safety : www.nauclear.com)’의 경우가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기반시설, 발전소, 교통, 통신, 공장시설 등의 재난안전분야에 효과적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기준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던 중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IO-WGCA IGC)의 국제표준검인증 방법에 따라 국제녹색기술 및 국제녹색상품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국내, 외적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국제녹색인증서와 실적증명서를 인정받아 쿠웨이트, 두바이, 사우디, 모로코, 베트남, 러시아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품질개선 성과공유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수의계약 조건을 받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최근에는 중국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글로벌 국제표준 ‘그린로드플랫폼’에 따라 수출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듯이 지금 세계는 기후환경분야에 새로운 녹색혁명이 진행 중이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은 기후환경 실천 기구이다.

## 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설립배경

오늘날 지구의 기후환경문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인류사회의 심각한 안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지구를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녹색기술상품 실천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UN과 세계정상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을 체결한 바 있다.

1985년 비엔나 회의에서 합의되고 1988년에 발효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은 다자간 환경협약으로 197개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보편적인 관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약중 하나이다.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4. 3.21. 발효되었으며, 이 또한 비준협약 당사국이 197개국이다.

이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녹색기술상품의 실천’은 인류가 반드시, 그리고 즉시 대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녹색기술상품 실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적인 조약법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수탁인은 오랜 연구결과 ‘기후환경 헌법’을 통한 국제적인 자치권을 가진 ‘국제기구’ 설립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어 20여 년 간의 노력 끝에 ‘기후환경 헌법’을 완성하였고 국

가개발에 대한 개도국 정부 개발제안 검토 등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회의록 7호를 근거하여 지적재산권이 있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을 요약한 '녹색기후기구 GCA 헌법'을 당시 G77의장국이었던 피지연방국에서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라 수탁 등록하였고, 국제적인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식 명칭을 INGO-WGCA(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로 변경하였으며, 피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유럽, 아프리카, 중국, 동남아 등에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사용허가 및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IO-WGCA(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로 범위를 넓혀 100여개 산하 기관(CCGI : Climate Change Global Institute)이 8대륙에서 본격적으로 국제 표준 녹색책무실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IO-WGCA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목적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 www.io-wgca.org)'는 기후 환경에 관련된 국제법과 비엔나 협약 등 조약법을 포괄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헌법'에 근거하여, 선진국 G20과 개발도상국 연합체 G77 및 최빈국, 섬나라까지 기후 환경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무기체에 대한 감찰, 감시, 지도, 교육, 공조조사 등을 실천하고, 전 세계의 녹색 기술, 상품, 기업 등을 발굴하여 국제 녹색검증, 인증 시스템을 통한 국제녹색상품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헌법' 실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헌법'은 'WTO, TRIPs 협정', 'UNILC국제법위원회'에서 국제법으로 확정 받은 'ICC국제형사재판소 관련 국제법'과 'ICC국제 상공회의소 관련 국제법' 및 이하 '중재 재판소 법령'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국제법상 기후환경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우주법, 형사법, 국제조약법, FTA, 국제지적재산권법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헌법은 그 자체가 국제기구이며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대통령 시행령과 시행 규칙 및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논한 책무 전 범위에 해당된다.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제법 및 조약법에 근거하였으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헌법'의 목적과 일치하고 재난 안전관리 분야까지 포괄되어 있다.

또한, '유럽에너지법'을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부록 국제 에너지 법'으로 공포함으로써 기후환경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 국제법과 이에 포괄된 국민건강, 생활, 국토 교통, 의료, 산업, 기술, 건축, 인프라, 물류, 소비 합리화, 물관리, 물 에너지 관리, 식수안전 공급, 친환경 자동차,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소비규제, 자원 순환, 기술선물상품, 국제금융, 글로벌 자산운용, FX를 활용한 기술.상품 선물거래, 탄소배출권 거래, 스톡옵션, 자산관리와 목적법인을 활용한 기술 개발 분야 등을 포괄하여 아포스티유에서 요구하는 각 국가의 강제법인 녹색법령의 책무 범위에 적용되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 헌법'에서는 기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 전 분야

별 녹색교육, 경력증명, 인증 제도를 통한 국제학위증명과 국제자격증명 및 국제녹색 검증, 인증되어 국제공증 후 아포스티유 IO-WGCA에 등록된 국제녹색기술 및 상품에 대한 FX 운영 등 국제녹색자금을 대한 국제금융주선을 지원하고 각 국가별 연구원이나 학계 등에게 국제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녹색기술, 녹색상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하여 추천 및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실천 세계선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는 중국, 대한민국, 네팔 등에서 다음과 같이 9차에 걸쳐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및 녹색실천에 대한 세계 선언문’을 공식발표하였으며 2019년 6월 『考試界』를 통하여 전 세계 대학 전자도서관과 법조계 전자통신망에 “제10차 기후환경세계선물거래소 운영을 위한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실천 세계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 1차 세계선언 (2016. 09. 중국 하남성)

중국 국무원 주관 200개국 중화경제인이 참여하는 ‘제6회 세계 중화 경제인 포럼’에 공식초대되어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실천에 대한 세계선언문’ 발표.

#### 2차 세계선언 (2016. 09. 중국 청도)

중국 보건협회 초청으로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실천에 대한 세계선언문’ 발표

#### 3차 세계선언 (2016. 10.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서울 한강세빛섬 의료건강문화 포럼 개최 및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세계선언’

#### 4차 세계선언 (2017. 05. 중국 북경)

중국베이징 올림픽공원 ‘중국저탄소투자중심’, ‘중국국호로펌’과 협약 및 세계선언

#### 5차 세계선언 (2018. 05. 대한민국 서울)

중국 一帶一路, SICO기후와 녹색성장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 담보로 2차 국제협약 및 세계선언

#### 6차 세계선언 (2018. 07. 중국 간난 티벳 자치주)

중국 간난티벳자치주 인민정부 초청으로 ‘전 세계 일대일로 지역 협력 및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실천에 대한 세계선언문’ 발표

#### 7차 세계선언 (2018. 07. 중국 란조우시)

중국 란조우시 자유무역시범구 초청으로 ‘전 세계 일대일로 지역 협력 및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실천에 대한 세계선언문’ 발표

#### 8차 세계선언 (2018. 12. 네팔 카트만두)

네팔환경부 초청으로 ‘세계석가문화보존위원회’와 국제협약을 통한 네팔 히말라야 세계선언

#### 9차 세계선언 (2019. 05.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중국인민정부 협조와 지원을 받아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기후환경세계선물거래소’ 시작 및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세계선언